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469

발의연월일: 2025. 1. 13.

발 의 자:이주영·천하람·이준석

전진숙 · 김미애 · 채현일

유용원 · 김현정 · 김선민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,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 보를 기록·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,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,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,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 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, 제9조의3 및 제21조제 1항제3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 중 "관리하여야 한다"를 "관리하고, 이를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관리(이하 "미숙아등 통계관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미숙아등을 진단·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 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 다.

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4제2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를 "시·도지사"로 한다. 제21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미숙아등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9조의2(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제9조의2(미숙아등의 정보 기록 • 관리)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• 관리) -----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・관리 하여야 한다. 하고, 이를 관할 특별시장・광 역시장 • 특별자치시장 •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 •도지사"라 한다)를 거쳐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 <신 설> 제9조의3(미숙아등의 통계관리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 아등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지 원하기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 생 현황, 성장 및 치료 과정 등 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 료를 수집 · 분석하고 관리(이 하 "미숙아등 통계관리"라 한 다)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

제11조의4(난임전문상담센터의 | 제11조의4(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 • 운영 등) ① (생 략)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 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정하는 기관에 위탁 · 운영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숙아등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미숙 아등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, 「국민건강보험 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그 밖 에 미숙아등에 관한 사업을 하 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④ 미숙아등 통계관리의 내용 •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.

설치 ·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 음)

(2) <u>시・노시사</u>	

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 전문상담센터(이하 "권역별 난 임전문상담센터"라 한다)를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~ 9. (생략)

② (생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------

> 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미 숙아등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

4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